

수원고등법원 2020. 6. 4 선고 2019나18187 판결 [매매대금등지급청구 및 유체동산인도청구]

재판경과

수원고등법원 2020. 6. 4 선고 2019나18187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19. 8. 22 선고 2016가합82177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

담당변호사 윤영환

피고, 피항소인재단법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금성

담당변호사 오영열

변론 종결2020. 5. 14.

판결 선고2020. 6. 4.

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6가합82177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, 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,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081,937,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5. 30.부터 2019. 7. 3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②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야외봉안담을 인도하고,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야외봉안담을 양도, 임대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위 야외봉안담을 제3자에게 양도, 임대, 담보제공,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야외봉안담을 양도 및 임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,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야외봉안담을 양도, 임대받은 제3자가 이를 사용, 수익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(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, D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.)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.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이유 중 "피고 C"을 "피고"로, "피고 B"을 "B"으로, "피고 D"를 "D"로 각각 고친다.

○ 11쪽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(B, D가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에 관하여 개별적인 수권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에 첨부된 피고의 「이사회 의사록」(이하 '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'이라 한다)이 있으나, 갑 제23호증, 을나 제5,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이사장 및 이사들의 인영과 이 사건 위·수탁계약서 및 피고의 정관(을나 제7호증)에 날인된

그들의 인영이 상이하고, 이에 관하여 피고의 이사 중 한 명인 X는 수사기관에서 '자신을 포함하여 이 사건 이사회이사록에 날인된 이사들의 인영이 실제 사용하는 인영과 모두 다른 것으로 보아 누군가 인장을 허위로 만들어 의사록에 날인한 것으로 생각되고, 이 사건 이사회이사록 기재와 같은 이사회를 개최한 적도 없다'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(을나 제5호증),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회이사록은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기재에 의하여 B, D가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에 관하여 개별적인 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)』

○ 13쪽 2행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또한 갑 제1, 23호증, 을나 제3,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D는 원고에게 별도의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고 이 사건 위·수탁계약서와 이사회이사록만 제시한 사실, 이 사건 위·수탁계약서에는 B이나 D에게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없는 사실, 이 사건 이사회이사록에 날인된 이사장 및 이사들의 인영과 이 사건 위·수탁계약서에 날인된 그들의 인영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, 이 사건 위·수탁계약서에 별지로 첨부된 「담보제공 부동산 목록」에는 이 사건 야외봉안담이 없고, 이 사건 이사회이사록에도 연대보증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담보제공의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원고로서는 D가 제시한 이 사건 위·수탁계약서와 이사회이사록의 내용을 살펴보았다면, B, D에게 피고 명의로 매매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이 사건 야외봉안담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.』

○ 14쪽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라) 원고는, B 및 D가 2013. 7. 18. 피고 명의로 Y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대하여 피고가 승인한 것을 들어(갑 제16호증의 1, 2) 이 사건 매매계약도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, 피고가 Y과의 투자계약을 승인한 것만으로 그와 별개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까지 추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.』

3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강경구

판사박광서

판사차지원

별지